참고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의 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훈령 명칭 변경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1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의 줄임말 사용 및 근거 조항 변경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본부세관"이란 「관세법 시행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 영	• 줄임말 사용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을 말한다.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1.·2. (생 략) 3.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형태,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심사한다. 4.·5. (생 략) 6.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제7조의 검토사항을 모두 심사하는 것	제3조(기본원칙) ----------. 1.·2. (현행과 같음) 3. ---------- 법 ----------. 4.·5. (현행과 같음) 6. ----------	• 줄임말 사용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7조의 검토사항 중 일부에 한정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할 경우 일반 사전심사로 변경하여 처리한다.	---------- ---------- ---------- ---------- ---- 처리할 수 있다.	• 일반 사전심사로 변경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결정
제4조(사전상담) ① 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사전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상담을 수행할 심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사전상담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상담) ① ---------- 고시 제46조 ---------- ---------- ---------- ---------- ---------- ---------- ---------- ---------- --------.	• 근거 조항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부서를 지정하는 기준은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해	② ---------- ---------- --. <단서 삭제>	• 불필요한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다.		
제5조(신청서 접수 등) ① 고시 제61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은 본부세관장(심사총괄과장, 납세지원과장 또는 심사과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본부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신청서 접수 등) ① ---- 제45조---------- ---- 본부세관장을 ---------- ---------- ---------- ---------- ---------- ---------- ---------- ---------- ---------- ----------.	• 근거 조항 변경 •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세관별 신청서를 접수하는 심사부서가 다르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심사부서 규정을 삭제
② 고시 제61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본부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신청 내용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 제45조---------- ---------- ---------- ----------.	• 근거 조항 변경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③ ----------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따라 등록된 신청 내용을 기초로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	•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의 서식 규정
④ 본부세관장은 고시 제6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사실을 기초로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를 작성한 후에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 제47조제1항----------.	• 근거 조항 변경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본부세관장에게 고시 제6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한다. 다만, 신청인이 업체 본사 이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3호의 적	⑤ ---------- - 제47조제11항---------- ----------제4호---	• 근거 조항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4호 이하의 순서에 따른다.	----------제5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철회한 후 새롭게 신청한 경우 직전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철회한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과거 검토하였던 세관장에게 우선 심사하도록 규정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⑥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심사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다.	⑥ ----------. <단서 삭제>	• 불필요한 규정
⑦ 관세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사전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⑦ ---------- 제6항에도----------	• 용어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경우에는 심사부서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고시 제67조 및 제54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다. ⑨ (생 략)	---- 심사세관 및 심사부서를 ----------. ⑧ ---------- 제47조제2항 ----------. ⑨ (현행과 같음)	• 관세청장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부세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근거 조항 변경
제8조(사실관계 확인 등) ① 고시 제63조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은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수행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사실관계 확인 등) ① -- 제47조제5항----------.	• 근거 조항 변경
② 고시 제63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 제47조제5항----------. 1. ~ 3. (현행과 같음)	• 근거 조항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0조(진행사항 관리) ① ~ ③ (생 략)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 및 진행사항을 대장으로 누적관리하고 동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한다.	제10조(진행사항 관리) ① ~ ③ (생 략) ④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	•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의 서식 규정
<신 설>	제11조(사전심사 변경 신청 등의 처리) ① 본부세관장은 고시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변경·철회·취소의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5조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	• 고시 제49조의 연례보고 검토 결과에 따른 사유 이외의 사전심사의 변경·철회·취소 시 처리 절차 신설 •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다. 다만, 신청인의 철회 요청 또는 고시 제49조제5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변동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단서로 규정
<신 설>	제12조(재심사 신청의 처리) ① 법 제37조제3항 및 고시 제48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관세평가분류원장과 본부세관장은 고시 제46조에 따른 사전상담을 생략하고 고시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의 재심사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의 검토의견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재심사 신청 시 간소화할 수 있는 처리 절차 신설 - 재심사할 때 사전상담은 생략하도록 규정 • 본부세관장의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와 동일한 경우 실무회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신 설>	제13조(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① 영 제31조제7항제4호 및 고시 제50조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본부세관장은 해당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의 전제가 된 거래내용 및 시장상황 등의 변동여부와 적용기간 동안의 연례보고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절차 신설 - 적용기간 연장 신청 시 검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11조(검토결과의 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단서 신설 > 1. ~ 4. (생 략) ③ (생 략)	제14조(검토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에서 이동 •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세관 공무원이 없는 본부세관 심사부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필요
제12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위원회를 둔다. 1. (생 략) 2. 법 제37조제6항, 영 제31조제7항에 대한 사항 3. (생 략)	제15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 1. (현행과 같음) 2. ---------- 영 제31조제10항에 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 제12조에서 이동 • 근거 조항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3. 본부세관 심사담당 주무과장 5명 4.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1.·2. (생 략) 3. 본부세관 심사담당 과장 5명 4. (생 략)	• 위원 후보군 확대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라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고시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원회가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에도 심의 안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8조----------	• 제13조에서 이동 • 근거 조항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연례보고서) ① 고시 제65조에 따른 연례보고서는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이 접수하여 검토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이상없음" 또는 "이상있음(취소, 철회, 변경)"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의 연례보고서 검토 의견에 따라 조치(다만, 검토 의견이 "취소, 철회, 변경 등 이상있음"일 경우에는 제12조의 위원회의 심	제17조(연례보고서의 처리) ① -- 제49조----------. ② ---------- 별지 제6호서식의 연례보고 검토결과 보고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 ③ ----------제16조----------	• 제14조에서 이동, 조 제목 및 근거 조항 변경 • 본부세관장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연례보고서를 검토한 내역을 통보할 때 사용할 서식을 마련 • 근거 조항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의를 거쳐야 한다)할 수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본부세관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 2021년 7월 1일----------.	• 제15조에서 이동, 재검토 기한 기산일 개정
< 신 설 >	부칙 <제0000호, 2021.00.00> 이 훈령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훈령 시행일 적용시점 개정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

검토단계	내용	확인 여부
1 신청서류 확인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행령 제23조 및 고시 제19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형식적 요건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신청대상 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HSK 등)	
	3.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가격결정방법의 구체성	
	4. 당초 가격결정방식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시 가격결정방식과의 동일성 여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인)

개 정

[별지 제2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

검토단계	내용	확인 여부
1 신청서류 확인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행령 제23조 및 고시 제28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형식적 요건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신청대상 물품의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HSK 등)	
	3.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가격결정방법의 구체성	
	4. 당초 가격결정방식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시 가격결정방식과의 동일성 여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인)

현 행	개 정
[별지 제5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 IV. 관련 규정 및 사례 (추가, 삭제, 필요시 별첨으로 이동) 1. 관세법 or WTO관세평가협정 □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2. 관세법 시행령 □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 3. 관세법 시행규칙 □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따른 특수관계 영향 판단) 4. 심사에 참고한 지침 or 해외사례	[별지 제5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 IV. 관련 규정 및 사례 (추가, 삭제, 필요시 별첨으로 이동) 1. 관세법 or WTO관세평가협정 □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2. 관세법 시행령 □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② 3. 관세법 시행규칙 □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4.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 제28조(판매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5. 심사에 참고한 지침 or 해외사례

현 행	개 정

Ⅶ.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예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결과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공제요소(-)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____조 적용		

「관세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ㅇㅇㅇㅇㅇ (주) 대표 ㅇㅇㅇ 귀하

※ 1. 심사결과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심사결과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Ⅶ.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안)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수입예정시기	
⑩ 사전심사 검토의견			⑪ 근거 또는 이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영향 미침		
		영향 미치지 않음		
관세법 제3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가산요소( )		
		공제요소( )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법 제____조 적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48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인)

귀 하

※ 1.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2. 검토의견에 부동의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 행	개 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주 소	(☎)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	
	⑥신청인과의 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⑩ 통관예정세관	
⑪ 신청내용				
⑫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 ▪				
⑬ 결정조건	▪ ※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련기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점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사전심사 결정물품				
⑨ 적용기간		20 . . . ~ 20 . . .	⑩ 통관예정세관	
⑪ 연례보고 세관 및 부서				
⑫ 신청내용				
⑬ 사전심사 결과 과세가격결정방법				
⑭ 결정조건				

※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관계와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즉시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직인

<뒷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에 따른 이행의무 안내

※ 관세법 제42조2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개 정
< 신 설 >	[별지 제6호서식] 연례보고 검토결과 보고서 **ㅇㅇㅇㅇ(주) ACVA 연례보고 검토 보고** (ㅇㅇ세관 ㅇㅇㅇㅇ과 심사0팀, 20××. . .) **1. 검토 배경** ○ **2. ACVA 결정 내용** □ 신청인 개요 ○ □ ACVA 심사 내역 ○ ACVA 대상품목 ○ 거래가격 결정방법 ○ 거래상황 검증 □ ACVA 결정 내역 ○ 과세가격 결정방법 ○ ACVA 결정조건 ○ 연례보고 제출자료 **3. 연례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현 행	개 정
	□ 20××년 연례보고 내역 ○ □ 20××년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적정성 검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ACVA 결정조건 이행 □ ACVA 결정조건 미충족 원인 검토 ○ □ 기타 연례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등 검토 ○ ○ **4. 종합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없음** or **이상있음**(변경, 철회, 취소) ○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적정 or 부적정 ○ ACVA 결정조건 충족 or 불충족 □ 조치할 사항 ○ **5. 향후 계획** ○

현 행	개 정
< 신 설 >	[별지 제7호서식]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

특수관계 사전심사 관리대장

관리 번호	신청 업체	접수일	심사 세관	심사팀 (팀장)	대리인	신청 품목	신청 내용	보완요구				수정신청				위원회 개최일	위원회 결과	승인일	승인 품목
								1차 일자	1차 내용	2차 일자	2차 내용	요구 일자	요구 내용	신청 일자	신청 내용				